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050
----------	-------

발의연월일 : 2014. 4. 3.

발 의 자 : 전병헌 · 김태년 · 이만우
정세균 · 장하나 · 정성호
김기준 · 남인순 · 유대운
김성곤 · 이종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무허가 주택건물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것임. 그러나 현행법 시행이후 정부제 지자체에 배포한 시행지침과 ‘업무처리 가이드’가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국토부의 시행지침에 따르면 대상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더라도 이로 인해 늘어나는 면적, 가구 수 만큼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함.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이라는 입법취지에 반해 새로운 비용과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임. 이에, 「주차장법」에 대한 적용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입법취지를 달성하고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 신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특례)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중 “시행일로부터 1년간”을 “2015년 7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받는 대상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특례)</u>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u>제6조(시정명령 등) (생 략)</u>	<u>제7조(시정명령 등) (현행 제6조와 같음)</u>
<u>제7조(과태료) (생 략)</u>	<u>제8조(과태료) (현행 제7조와 같음)</u>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u>시행일</u>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u>2015년 7월 16일까지</u>-----.